

#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,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
- 나.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·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,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,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출연 사무명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
- 나.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1) 추진근거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

제3조(출연금)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2) 추진 필요성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,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·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, 중앙정부 및 각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

## 다. 출연 사무내용

- 1)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
- 2) 지방행정·지방재정·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
- 3) 지방투자사업 (예비)타당성 조사·평가 연구 및 용역 수탁
- 4)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
- 5)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, 협력

## 라. 출연 기관 개요

### 1) 연 혁

- '84. 9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(서울시 마포구)
- '86. 5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
- '15.10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(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)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
- '16.12월: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



▶ 직 원 : 총 86명 (원장1, 연구직 49, 행정직 19, 전문직 1, 투자분석직 16)

(2022. 7. 27. 기준, 단위:명)

구분	계	원장	연구직	행정직	전문직	투자분석직
정 원	104	1	65	19	1	18
현 원	86	1	49	19	1	16
과부족	△18	-	△16	-	-	△2

## 5) 시설현황

- 규 모 : 지상 3층, 지하 2층 / 연면적 5,742.68m<sup>2</sup>
- 건축년도 : 2016년('16.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)
- 시설현황

층 별	주요 용도
지하 2층	주차장, 체력단련실, 기계실, 전기실
지하 1층	자료실
1층	로비, 경영지원실, 기획조정실 연구기획과
2층	임원실, 연구실(지방재정), 대회의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
3층	연구실(자치분권제도, 지방행정혁신, 지역포용발전), 중회의실, 소회의실, 여성휴게소
※ LIMAC 별도 청사 임차 사용 중(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5~6층)	

## 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1) '23년 출연금 편성액(안) : 250백만원

### 2) 산출근거

- 지방자치단체(17개) 출연금 총 4,150백만원

▶ 특별·광역시·도(16개) 출연금 : 각 250백만원

▶ 세종특별자치시(1개) 출연금 : 150백만원

※ 분담근거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(출연금)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
(출연금의 교부절차 등)

바. 202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심의 결과(별첨)

사. 2021년 결산 보고서(별첨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

제3조(출연금)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2)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연구팀 김지량 (☎ 2133-7766)